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7 선고 2020가단44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5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230,452원 및 그중,
가. 46,730,613원에 대하여 2019. 12. 9.부터 2020. 3. 7.까지는 연 9%, 2020. 3. 8.부터 다 갚는
날까지는 연 12%의,
나. 3,269,387원에 대하여 2019. 12. 14.부터 2020. 3. 7.까지는 연 6%, 2020. 3. 8.부터 다 갚는
날까지는 연 12%의
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순한

별지